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2.04.21. (목) 18:00~20: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1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김형중(의장), 박상도, 한승준, 김종현, 민병걸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 다. 학생대표 : 추시연, 허예진
 - 라.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 마. 외 부 : 백성기
4. 불참자 : 이혜숙(직원대표), 박신혜(조교대표), 김태현(외부)
5. 심의 안건
 - 가.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나.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다.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6. 자문 안건
 - 가.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

1. 심의 안건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휴먼서비스대학원 기독교학과 기독교대안교육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대학원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이나 폐지는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 폐지되는 전공도 신설될 때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 신설되었던 것이므로 학과 폐지 시, 입학 현황이나 담당 교원 여부 외에도 대학원이나 학과 운영의 방향성 등 폐지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대학원의 전공 폐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임에 동의한다. 단, 이번 전공 폐지 건은 해당 학과에서 더이상 전공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과의 요청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과별 입학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폐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 검토 사항은 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원 학과 신설에 대한 의견

을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하되, 존속 학생들에 대하여 전공 변경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 대학원발전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대학원발전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와 달리 어떻게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인가.
- 현재 대학원 입시, 학칙 개정, 학과 신설 등 대학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과대학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학원발전위원회를 통해 대학원 발전에 대해 계획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여러 학과 교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향후 대학원발전위원회에 여러 학과 교원을 위촉하여 대학원위원회와 차별화된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대학원발전위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규정에 반영하여 대학원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대학원위원회에 대해서는 학칙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원발전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한다.

2.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교육부 2023학년도 첨단분야 학과 학생정원 조정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산하에 바이오헬스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 첨단학과 신설에 따라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는데, 첨단학과가 모두 신설된 후의 자율전공학부 입학정원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
- 이번에 신설하는 바이오헬스융합학과까지 감안하면 2027년 기준으로 자율전공학부는 55명의 입학정원이 남게 된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대학평의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회의일 및 의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누가 발의하는 것인가. 대학평의원회를 책무성 있게 운영하려면 안건의 발의 주체가 대학평의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사항이 정해져 있다.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을 각 부서에서 작성하면 경영기획팀장이 대학평의원회 간사로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을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자체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 아니다. 지금도 회의일 7일 전까지 의안을 명시하여 평의원에게 회의일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단, 긴급한 안건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안건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어 “7일”이라는 기한을 못 지킬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단서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가.
 -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소개>대학현황>대학평의원회로 들어가면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 평의원 명단, 회의개최 사전 공고 및 개최 연혁, 회의록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자문 안건 -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

재무팀장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21학년도 학교 회계 자금계산서 개요를 보면 수입과 지출 부문 각각 결산액과 예산액에 따른 증감액이 표기되어 있다. 증감액의 규모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교내 여러 학과와 행정부서가 기존에 수립했던 예산 계획 대비 사업을 집행한 결과가 결산액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감액에는 다양한 요인과 사유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항목에 대해서 특정한 이유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산학협력단 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산학협력단 전입금의 규모가 다소 작다고 판단된다.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연구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대학으로 전출하는데 현재 확인되는 전입금으로 볼 때 산학협력단 전체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예측된다. 산학협력단이 별도 회계를 운영하더라도 차후에는 교비회계 결산을 자문하는 데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 산학협력단 회계는 교비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 매년 전입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의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현재 수준의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다. 차후에는 교비회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산학협력단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 적립금 인출이 이전 대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 적립금 인출이 감소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2019학년도에 정문 앞 토지 매입을 위해 인출한 적립기금이 있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2021학년도에 재적립을 한 것이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의 불용 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적립하였으며, 지출 예산 대비 등록금 수입 외 부족분을 인출하는 데에 있어 전년도보다 적게 인출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 학교법인에서 법정 부담금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가.
- 학교법인에서는 사학연금 법정 부담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고 부족한 금액은 교육부의 승인을 득하여 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 학교법인이 전출한 법정 부담금 비율이 매우 적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매년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교법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 부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총장이나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법정 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내 구성원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학교법인도 대학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 이 필요한 부분이다.

-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교내 구성원인 교원들이 노력으로 실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교원들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 교원이 연구비 등을 확보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수입, 다양한 기부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수입이 각각 3분의 1씩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교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 활성화 등 교원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의 조성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 작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전임 기획처장이 우리 대학 재정의 어려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인가.
 - 현재 남아있는 기금 중 경상비로 지출이 가능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가용 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기금을 일부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바이다. 앞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올해 감소시킨 적자 규모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오늘 회의 중 공유된 결산 요약자료가 상세하여 회의 전에 공유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자료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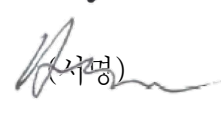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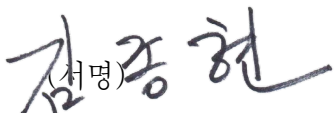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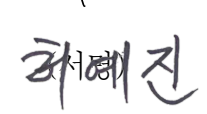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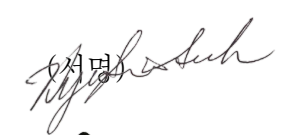
- 의장이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차기 회의 일정

○ 직제 개편(안) 심의를 위하여 6~7월 경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20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4월 21일

의 장	김 형 중	
부 의 장	조 현 미	
평 의 원	박 상 도	
평 의 원	한 승 준	
평 의 원	김 종 현	
평 의 원	민 병 결	
평 의 원	추 시 연	
평 의 원	허 예 진	
평 의 원	최 형 심	
평 의 원	이 귀 우	
평 의 원	백 성 기	
간 사	하 성 호	